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8
----------	------

제출일자: 2019. 11. 21
제 출 자: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달성복지재단 임원 선임 방법, 임기 등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의 구성 등

- 1) 구성: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2인
- 2)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명
 - 가) 이사장: 이사 중에서 호선
 - 나) 상임이사: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
- 3) 이사장의 임기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 4) 상임이사의 임기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 5)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나.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 업무를 총괄
- 2) 상임이사: 재단의 업무를 총괄
- 3) 이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 심의·의결
- 4) 감사: 재단의 회계 및 사무 감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9. 1. 4. ~ 1.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u>재단은 이사회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u>	제7조(임원) ① <u>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u>
② <u>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대표 이사를 겸한다.</u>	② <u>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③ <u>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u>	③ <u>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u>
	④ <u>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u>
	⑤ <u>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u>
	⑥ <u>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u>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직무) ① <u>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u> ② <u>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8조(임원의 직무) ① <u>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② <u>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③ <u>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u> ④ <u>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10조(사무국) <u>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u>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u>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참고 1

관계법령(발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